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심의 • 의결

**안건번호** 제 2024-002-011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4. 1. 24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
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 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이 유

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<sup>1)</sup>」(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)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이다.

<sup>1)</sup> 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 일부개정, 2023. 9. 15. 시행

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이첩된(2021. 10. 28.)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피심인은 '21.8월부터 거주 중인 주택 외벽에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목적으로 건물 앞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대를 설치·운영하면서, 설치목적 및 장소, 촬영 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항목이 기재된 법정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\* 'CCTV 녹화중'이라는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나('21.11.3.) 보호법에 정한 기재 사항을 누락함

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. 11. 8. ~ 11. 28.간 '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총 3차례 요청하였으나, 모두 반송처리 되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전자관보에 공고(제2023-103호, 공고일 2023.12.4.)를 하였으며, 게시 기간 만료후 14일 이내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 1. 관련법 규정

舊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"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<sup>(제1호)</sup>, 촬영 범위 및 시간<sup>(제2호)</sup>, 관리책임자성명 및 연락처<sup>(제3호)</sup>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sup>(제4호)</sup>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2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
- ▶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 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▶ 상기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#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(시정조치 등)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2024년 1월 24일

위원장 고학수 (서명)

부위	원장	최	장	혁	(서	명)
위	원	김	일	환	(서	명)
위	원	김	진	욱	(서	명)
위	원	김	진	환	(서	명)

위 원 박상희 (서명)

위 원 윤영미 (서명)

위 원 조소영 (서명)